



김해시복지재단

## 1교 1복지시설 결연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

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합성초등학교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.)는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아동·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이 국민의 자율성, 책임성, 주체성 등 자원 봉사 기본정신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.

**제2조(합의정신)** 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**제3조(협약범위)**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교환
2. 사회복지사업 실천기회 및 교육제공
3. 대외홍보
4.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

**제4조(비밀보호)** 업무협력과정에서 상호 취득한 비밀과 업무내용은 외부에 공개치 않는다.

**제5조(권리·의무의 승계)** 본 결연서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결연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**제6조(신의성실)** 협약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며, 제반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준수한다.

**제7조(발효, 유효기관, 종료)** 협력기간은 협약서 날인 후 1년으로 하고, 이후 상호 의의제기가 없을 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. (연장 시 기존협약서 효력 유지)

이 협약은 증명을 위해 2부 작성하여 서명,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하며,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.

2017년 4월 28일



김해시복지재단

## 협 약 서

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합성초등학교는  
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 
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 
상호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단체로 협약한다.

2017년 4월 28일

구산사회복지관

관장 조재판

김해합성초등학교

교장 최윤환

조재판

최윤환

## 1교 1복지시설 결연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

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동광초등학교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.)는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아동·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이 국민의 자율성, 책임성, 주체성 등 자원 봉사 기본정신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합의정신) 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제3조(협약범위)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교환
2. 사회복지사업 실천기회 및 교육제공 - 자원봉사동아리 구성과 운영
3. 대외홍보
4.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

제4조(비밀보호) 업무협력과정에서 상호 취득한 비밀과 업무내용은 외부에 공개치 않는다.

제5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결연서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결연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6조(신의성실) 협약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며, 제반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준수한다.

제7조(발효, 유효기관, 종료) 협력기간은 협약서 날인 후 1년으로 하고, 이후 상호 의의제기가 없을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. (연장 시 기존협약서 효력 유지)

이 협약은 증명을 위해 2부 작성하여 서명,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며,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.

2017년 4월 5일

## 협 약 서

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동광초등학교는  
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 
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 
상호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단체로 협약한다.

2017년 4월 5일

구산사회복지관

관장 조재판

김해동광초등학교

교장 손승원

조재판

손승원

## 1교 1복지시설 결연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

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삼성초등학교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.)는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아동·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이 국민의 자율성, 책임성, 주체성 등 자원봉사 기본정신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합의정신) 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제3조(협약범위)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 할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교환
2. 사회복지사업 실천기회 및 교육제공 - 자원봉사동아리 구성과 운영
3. 대외홍보
4.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

제4조(비밀보호) 업무협력과정에서 상호 취득한 비밀과 업무내용은 외부에 공개치 않는다.

제5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결연서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결연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6조(신의성실) 협약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며, 제반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준수한다.

제7조(발효, 유효기관, 종료) 협약기간은 협약서 날인 후 1년으로 하고, 이후 상호 의의제기가 없을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. (연장 시 기존협약서 효력 유지)

이 협약은 증명을 위해 2부 작성하여 서명,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며,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.

2017년 4월 11일

## 협 약 서

김해시복지재단 구산사회복지관과 김해삼성초등학교는  
교육의 근본이념과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 
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 
상호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단체로 협약한다.

2017년 4월 11일

구산사회복지관  
관장 조재판

김해삼성초등학교  
교장 배관곤

조재판

배관곤